

4 入学料及び授業料等について

(1) 入学料・入学料・授業料

(令和3年4月1日現在)

区分	入学料	入学料	授業料(注1)		
			(通信制課程は通信教育受講料)		
			年額	納入回数	1回の納入額
全日制課程	2,200円	5,650円	118,800円	2回 (注2)	第1回： 年額の3/12 第2回： 年額の9/12
定時制課程	950円	2,100円	32,400円		
定時制課程 (単位制)	950円	2,100円	1単位あたり1,740円 ×履修単位数		
通信制課程	950円	500円	1単位あたり336円 ×履修単位数		

(注1) 平成26年度入学生から、**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制度**が導入されました。就学支援金制度とは、区市町村民税の課税標準額×6%－区市町村民税の調整控除の額(※)が304,200円未満(年収目安約910万円未満)の世帯の生徒が申請を行い、受給認定された場合、学校に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で、その生徒の授業料等が無料になる制度です。返済の必要はありません。**ただし、支給手続きを行わない場合は、授業料を御負担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

また、既に高校を卒業したことがある方及び修業年限(全日制36か月、定時制48か月)を超えて在学している方については、就学支援金の対象者とならないため、原則として授業料を徴収します。

※政令指定都市の場合は、調整控除の額に3/4を乗じて計算します。

(注2) 授業料の納入回数は2回ですが、分割払いとすることも可能です。

※**入学料及び授業料の納入が経済的に困難な家庭については、免除又は2分の1に減額する制度があります。**

※**所得制限により就学支援金の適用外となった場合で、保護者等の扶養する23歳未満の子が3人以上いる世帯は、申請の上、授業料を2分の1に減額します。**詳細は入学が決定した際に、入学予定の学校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2) 奨学のための給付金について

高校では、入学料及び授業料とは別に、学校ごとに決定した修学旅行等積立金、生徒会費、定時制の給食費等の学校徴収金の徴収があります。

平成26年度入学生から、授業料・通信教育受講料以外の教育に必要な経費(教科書費、教材費、学用品費、通学用品費、教科外活動費、生徒会費等)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高校生等がいる生活保護受給世帯又は都道府県民税所得割額及び区市町村民税所得割額が非課税の世帯を対象に奨学のための給付金の認定を受けた方に給付金を支給しています。返済の必要はありません。

世帯区分	課程等	給付額(年額)
生活保護受給世帯	全日制課程	32,300円
	定時制課程	
	通信制課程	
都道府県民税所得割額及び区市町村民税所得割額が非課税の世帯	全日制課程	第1子 110,100円
	定時制課程	
	全日制課程	第2子以降(15歳以上23歳未満の扶養されている兄弟姉妹又は高校生等である兄弟姉妹がいる方) 141,700円
	定時制課程	
	通信制課程	48,500円

4 입학전형료 및 수업료 등에 대하여

(1) 입학전형료 · 입학금 · 수업료

(2021년 4월 1일 현재)

구 분	입학전형료	입 학 금	수 업 료(주 1) (통신제 과정은 통신교육 수강료)		
			연 간 액	납부회수	1 회 납부액
전 일 제 과 정	2,200 엔	5,650 엔	118,800 엔	2 회 (주 2)	제1회: 연간금액의3/ 12 제2회: 연간금액의9/ 12
정 시 제 과 정	950 엔	2,100 엔	32,400 엔		
정 시 제 과 정 (단 위 제)	950 엔	2,100 엔	1 단위당 1,740 엔 ×이수 단위수		
통 신 제 과 정	950 엔	500 엔	1 단위당 336 엔 ×이수 단위수		

(주 1) 2014 년도 입학생부터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취학지원금 제도란 구시정촌민세의 과세표준액 × 6% - 구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이 304,200 엔 미만(연수입 기준 약 910 만엔 미만)인 세대의 학생이 신청하여 수급이 인정되면 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학생의 수업료 등이 무료가 되는 제도입니다.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급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업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는 분 및 수업연한(전일제 36 개월, 정시제 48 개월)을 넘어서 재학하고 있는 분은 취학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합니다.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 공제액에 3/4 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 2) 수업료 납부 횟수는 2 회로 되어 있으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1/2 로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제한으로 취학지원금 적용대상이 된 경우로 보호자 등이 부양하는 23 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세대는 신청하시면 수업료를 1/2로 감액합니다.** 자세한 것은 입학이 결정되었을 때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에 대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와는 별도로 학교별로 결정한 수학여행 등 적립금, 학생회비, 정시제의 급식비 등 학교 징수금이 있습니다.

2014 년도 입학생부터 수업료 · 통신교육 수강료 이외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과외활동비, 학생회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교생 등이 있는 생활보호수급세대 또는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장학 급부금 인정을 받은 분에게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구분	과정 등	급부액(연간)
생활보호수급세대	전일제과정	32,300 엔
	정시제과정	
	통신제과정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 비과세 세대	전일제과정	110,100 엔
	정시제과정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 비과세 세대	전일제과정	141,700 엔
	정시제과정	
	통신제과정	

(3) 給付型奨学金について

平成29年度から、家庭の経済状況にかかわらず、誰もが安心して学び、持てる可能性を最大限伸ばすことができるよう、学習の成果を明らかにする資格試験や学校における勉強合宿・語学合宿等、生徒の意思により参加する教育活動にかかる経費等を、保護者の代わりに負担する都独自の現物給付方式の奨学金制度が導入されました。

支給対象者は、都立高校等に在籍する生徒のうち、以下の条件に該当する方です。

世帯区分	給付限度額（上限）
生活保護受給世帯、 都道府県民税所得割額及び区市町村民税所得割額が 非課税の世帯	50,000円
都道府県民税所得割額及び区市町村民税所得割額の 合算が85,500円未満の世帯	30,000円

※ 上記世帯の生徒が申請を行い、受給認定されることにより、生徒が通う学校の教育活動にかかる経費にあてるものとして支給する制度です。返済の必要はありません。**ただし、学校の教育活動に参加しない場合は支給対象となりません。**

具体的な対象経費については学校によって異なりますので、詳細は入学が決定した際に、入学予定の学校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 から (3) まで、また、制度全般については、以下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都教育庁都立学校教育部高等学校教育課経理担当 電話 03(5320)7862(直通)

(3) 급부형 장학금에 대하여

2017 년도부터 가정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학습의 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격시험이나 학교의 학습 합숙, 어학 합숙 등 학생의 의사에 따라 참가하는 교육 활동에 드는 경비 등을 보호자 대신 부담하는 도쿄도의 독자적 현물급부방식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도립고등학교 등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세대구분	급부한도액(상한)
생활보호수급세대,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 비과세 세대	50,000 엔
도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이 85,500 엔 미만인 세대	30,000 엔

※상기 세대의 학생이 신청하여 수급이 인정되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드는 경비에 총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번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입학이 결정되었을 때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1)부터 (3)까지, 또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도 교육청 도립학교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 경리담당 전화 03-5320-7862(직통)